

한국 법학교육 정상화 방안과 입법청원서

이 관 희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차 례

I. 로스쿨 도입 회고와 반성

II. 로스쿨 법학교육의 본질적 문제점

1. 애초부터 예견되었던 본질적 문제점
 - (1) 대한변호사협회의 견해
 - (2) 이관희 교수의 견해
2. 현실적으로 나타난 로스쿨의 본질적 문제점
3. 로스쿨의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소결

III. 한국 법학교육의 정상화 방안

1. 마스터 플랜
2. 로스쿨 법학사 2년, 비법학사 3년 구분 교육해야 한다.
3. 새로운 예비시험 도입보다는 기존의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
 - (1) 일본식 예비시험 제도 무용론
 - (2) 사법시험 존치식 예비시험제도 찬성론
 - (3) 예비시험제도 도입 반대론
 - (4) 유보 관망론
 - (5) 정 리(사시존치로 로스쿨 본질적 문제점 보완해야)
4. 로스쿨 변호사시험 폐지 검토와 상대평가제도 개선해야 한다.
 - (1) 변호사시험제도 폐지 검토
 - (2) 엄격한 상대평가제도 완화

IV. 결 어 (법개정 청원)

I. 로스쿨 도입 회고와 반성

2007년 7월 3일은 한국 법학계는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다. 우리의 법체계가 대륙법계인데 하루아침에 미국식 로스쿨법을 통과시켜버린 것이다.¹⁾ 그 당시 법학계와 법조계에서는 누구도 이 법이 통과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2005년 12월 정부법안 제출 후 논의과정에서 로스쿨이 우리 법체계에는 맞지 않고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어서 논의 자체가 거의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한변협에서는 2007년 4월 12일 로스쿨 반대성명을 내면서 ‘로스쿨의 허와 실’ ‘변호사 양성제도의 개혁방안’이라는 2개의 소책자를 발간했는데, 여기에서 개혁방안의 골자는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를 연계시켜 법학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필자가 2005년 1월부터 주장한 영국식 ‘학부 로스쿨’²⁾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³⁾ 그리하여 2007년 5월 대한변협이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주최한 ‘바람직한 로스쿨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필자가 “학부 로스쿨화 와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방안”을 발제하게 되었고 그곳에 참가한 다른 발제자와 토론자들도⁴⁾ 당시 법안의 로스쿨은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었다.

사실 로스쿨 문제는 1995년도 YS시대부터 논의가 됐는데, 법학교육의 문제점이 너무 심각해서 판을 엮어서라도 해결보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미국의 로스쿨제도를 도입해서라도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제대로 된

-
- 1) 당시 국회 속기록에 의하면, 로스쿨법은 23시 51분에 상정되었고 “장내 소란”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혼란스럽고 시끄러웠다. 다음 의안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3시 54분에 상정된 점을 고려하면 로스쿨 법은 3분만에 입법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법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을 정치적야합으로 통과시킨 것이었다. 줄고, 한국법학교육의 정상화과제, 공법연구(제39집, 2011. 6), 11면 참조.
 - 2) 영국은 미국과 같이 판례법체계의 국가이고 세계법률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법학부가 다른 학부와 같이 3년이고 이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자만이 1년간의 유료 실무로스쿨과정(런던에 4대 로스쿨이 있음)10여 과목을 합격한 후 로펌,검찰 등 각 직역에서 2년간 연수를 함으로써 법조인자격을 취득하는 능률적·효율적 체제이다. 줄고, 정보화시대의 법학교육개혁 방향, 한국인터넷법학회학술대회 (2005. 1. 12. 국회헌정기념관) ; 줄고, 미국식 로스쿨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 법률신문(2005. 1.20) 참조.
 - 3) 줄고, 변협의 로스쿨 대안에 대한 검토, 법률신문(2007. 4. 23) 참조
 - 4) 다른 발제자 이정환 변호사(변협 기획이사), 정종섭 교수(서울대), 토론자 최원진 교수(한국외대),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이상호 사회부장(문화일보), 김형두 부장판사(대법원), 조승헌 교수(방통대)

법조인 양성을 해야겠다고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문제를 살펴보면 로스쿨은 대안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났고 일단 변호사 수를 단계적으로 1000명까지 늘리고 사법연수원을 대폭개편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래도 법학교육이 너무나 파행이 되니까 98년도 DJ정부에 들어오면서 다시 사법개혁 법학교육 개혁이 화두에 올랐고 또 1년 동안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진지하게 논의를 했지만 결론은 역시 로스쿨제도는 아니라는 것이었다.⁵⁾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서 2004년 초 다시 사법개혁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조금 분위기가 달랐던 것은 2004년부터 일본에서 로스쿨제도를 시행했다는 것이었다. 일본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로스쿨 문제는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얘기를 꺼내서 일본사람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받아서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 당시에 법학교육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4. 12. 사개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결정하게 되는데 위원들(23명) 중 법학교수는 3명밖에 없었고, 변호사, 판사, 검사가 12명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사개위는 첨부 의견을 붙여 로스쿨 입학정원은 1,200명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미국식 로스쿨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런 대목이었다. 그리고 사법개혁위원회가 해체되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 2005-2006년)가 그것을 받았는데 사개추위는 주어진 조건(입학정원 1,200명)에 맞는 조건을 만들 뿐이지 진정한 법학교육정상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각 대학 교수들은 대학의 상업주의와 맞물려 어떻게든 자기들 대학에 로스쿨을 도입하고 보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미국식 로스쿨은 법학교육 정상화 방안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로스쿨제도에 대한 분명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메이저대학 교수들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한계선상의 대학 교수들은 그저 정원만 3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법학교수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은 로스쿨 3년으로는 정상적인 법학교육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침묵했거나 정원3000명 이상만을 무책임하게 주장했다는 것이다. 미국식 로스쿨이 그렇게 오랫동안 거론되어 온 것은 많은 문제점이 노정된 법학교육을 정상

5) 1999년도 세교육공동체위원회는 로스쿨을 건의하였으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이에 반대하고 '한국사법대학원' 제도를 건의하였고, 전국 대표성있는 18인의 법학교수로 구성된 법학교육개혁 공동연구회(사무국장 이광택 교수, 국민대)도 로스쿨 건의를 견제하며 5-6년제 법과대학안으로 결론내었다.

화 시켜보자는 취지였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역으로 전통법학교육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지금 로스쿨 교수들은 현행대로 일정기간 지나면 대충 로스쿨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경우도 있지만⁶⁾ 그 본질적인 문제점은 애초에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노정되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법학교육 전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2013년 지금 로스쿨 시행 만4년이 지나서 제2회 변호사시험을 치렀고 제5기 신입생을 선발한 시점에서 애초부터 예상했던 본질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은 철통을 요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대한법학교수회가 지난 3월 창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⁷⁾

올바른 법학교육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기본 틀이고, FTA국제 법률시장 개방시대에 국제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전통법학의 복원을 중심으로 한국 법학교육 정상화 방안 모색을 대한법학교수회 사단법인설립기념 심포지엄에서 강조하는 이유이다.

6) “지난 4월 9일에 국회에서 열린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 토론회(박영선의원 주최)에서 변호사예비시험 도입 반대의 입장 즉 현행 법전 월체제와 변호사 시험 체제의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주제발표를 한 분(로스쿨 제도발전실무위원장)이 “초기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로스쿨 시스템’은 빠른 속도로 정착하고 있으며, 법률가 양성제도의 중심축은 ‘시험’으로부터 ‘교육’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이라는 주장에 경악을 금 할 수 없다” 라고 개탄하고 있다. 이광수,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조인 선발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4. 29.이하 ‘서울변회심포지엄’ 이라 함), 자료집 15쪽 참조.

7)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상기 토론회 이외에도 6월 4일 예비시험 제2차 토론회(박영선의원), 6월 27일 전국 법과대학협의회 토론회(동국대 모의법정) 등인데, 2012년에도 제41기 사법연수생들이 ‘사법시험준치를 위한 입법의견서’ 법사위 제출(1월), 서울변협에서 ‘사법시험 준치 및 로스쿨 제도 개선 촉구’라는 제목으로 성명서 발표(2월), 전국법과대학협의회에서 ‘법학교육 정상화와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6월)가 개최되었다.

II. 로스쿨 법학교육의 본질적 문제점

1. 애초부터 예견되었던 본질적 문제점

(1) 대한변호사협회의 견해⁸⁾

1) 사개추위 로스쿨안은 그 자체로서 근거가 부족하다.

사개추위는 “현재 법학교육은 법조인 양성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못하고 인적, 물적 시설이 불충분한 상황이어서 법학교육을 도외시키고 고시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전공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법률지식만을 암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사법시험 제도는 응시 자격 및 응시횟수에 제한이 없어 과도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있는 폐해가 있으며, 출제방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예비법조인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변별력이 부족하고, 사법연수원 제도는 교과과정이 법원 및 검찰 실무에 치우쳐 있어 변호사 등 다른 직역으로 진출하는 연수생들에 대하여 충분한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변호사들이 송무업무에만 매달리게 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로스쿨제도가 유일한 대안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백서 115-116쪽)”고 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사개추위의 결론은 위와 같은 현재 법조인 양성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왜 로스쿨제도가 유일한 대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빠져 있으며, 로스쿨 제도가 우리 사회에 도입될 경우 과연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자체로서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2)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FTA, 법률시장 개방 등에 대비한 법조인의 전문성, 다양성, 국제경쟁력 강화는 관련이 없으며, 로스쿨만으로는 기본 소양을 가진 법조인 양성도 달성할 수 없다.

FTA나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법조인의 전문성, 다양성, 국제경쟁력은 법조인으로서 기본 소양을 교육받은 후 로펌 등에서 구체적인 실무를 통해 쌓아나가야 할 것이지, 이제 법조인의 기본 소양을 교육받아야 할 로스쿨에서

8)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양성제도 개혁방안(2007. 4. 11) 참조

교육될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국제관계 업무를 다루는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경우 국제관계 실무 감각과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충분한 해외연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FTA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향후 5년 이내에 완전 개방에 가까운 수준의 법률서비스 시장으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로스쿨을 도입하여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하자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합리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현재 로스쿨안에는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에 대하여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으며, 로스쿨의 교과과정에도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를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일본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 보고서에는 실무와의 연계성을 의식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소수, 쌍방향, 다방향적, 고밀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엄격한 성적평가 및 수료인정의 실효성을 담보하여야 한다는 등의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음), 로스쿨이 사법연수원과 어떻게 연계되며, 사법연수원을 폐지할 경우 실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어 일정한 소양을 가진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로스쿨 제도가 사개추위에서 제시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첫째, 사개추위에서는 현재 법학교육은 법조인 양성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못하고 인적, 물적 시설이 불충분한 상황이어서 법학교육을 도외시하고 고시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전공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법률지식만을 암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스쿨 제도를 제안하고 있으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법과대학에서 실시하는 법학교육이 지금보다 더 붕괴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울러 모든 학부학생을 로스쿨의 수험생으로 만듦으로서 대학교육을 황폐화하고, 현재의 고시학원보다 더 문제가 많은 로스쿨 입시학원을 난립케 만들 위험성까지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학교육의 현재의 문제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학교에서 하는 법학교육을 미국의 로스쿨 제도와 같이 없애지 않는 바에야 학부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가 바로 연계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고 로스쿨 제도가 현재 학부의 법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사개추위는 사법시험 제도는 응시자격 및 응시횟수에 제한이 없어 과도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업시험에 빠져있는 폐해가 있으며, 출제방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예비법조인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스쿨 제도를 제안하고 있으나, 로스쿨 제도라고 하여 이러한 문제가 바로 해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문제는 사법시험의 응시자격과 응시횟수를 적절하게 제한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굳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해결 가능하며, 오히려 법학교육 이수를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하는 경우 현재의 법학교육의 충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사개추위는 현재의 사법연수원 제도는 교과과정이 법원 및 검찰 실무에 치우쳐 있어 변호사 등 다른 직역으로 진출하는 연수생들에 대하여 충분한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변호사들이 송무업무에만 매달리게 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로스쿨제도가 유일한 대안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연수원 제도의 문제는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을 변경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며, 법조인의 양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실무교육 없이 로스쿨 교육만으로서 법조인의 질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로스쿨안은 극히 위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일본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과정은 우리와 다르다.

로스쿨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일본의 도입 사례를 들고 나오지만, 일본의 로스쿨 논의는 우리와는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일본의 로스쿨제도를 포함한 사법제도개혁은 1999. 7. 내각 산하에 설치된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 의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동 심의회는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2001. 6. 12. 내각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활동을 종료하였는바, 그 보고서에 서는 21세기 일본 사회의 모습, 일본 사회에서의 사법의 역할 및 법조의 역할을 먼저 검토한 다음,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방향과 이러한 사법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조의 형태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에 있어서 로스쿨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 보고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로스쿨이 어떠한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고서에서는 21세기 일본 사회를 국민이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는 사회로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서는 법의 지배의 원칙의 확립 및

공정한 사법제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법조는 '국민의 사회생활상의 의사'로서 국민 각자가 놓여진 구체적 생활상황 내지 요구에 맞는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하였고, 이러한 전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법개혁의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한 후, 이러한 사법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서는 양질의 법조인의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이를 위하여 즉시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늘려야 하며, 구체적으로 2004년에는 연 합격자수 150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2010년에는 연간 3,000명 달성을 목표로 하여 2018년까지 실제 활동하는 법조인구를 5만명 규모에 달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 후, 이렇게 대량으로 변호사를 충원하는 상황에서 문제되는 변호사의 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스쿨 제도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경우 로스쿨 제도는 바람직한 21세기 일본 사회의 방향 및 사법의 방향이 설정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조인 수가 설정된 후, 이러한 급격히 늘어야 하는 법조인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로스쿨 제도가 제안되어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로스쿨안은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로스쿨의 정원을 정하면 된다는 입장으로서(백서 119쪽), 우리 사회에서의 법조의 역할과 법조인의 수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단지 법조인의 전문성, 다양성, 국제경쟁력만을 높이기 위하여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백서 24쪽), 일본의 로스쿨 제도와는 그 방향 및 지향점이 전혀 다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미국의 로스쿨제도는 우리 법률문화에 적합한 제도가 아니다.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혁도 그 사회의 법률문화를 바탕으로 해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습니다. 사례 중심의 실용적 법학교육, 각 주(州)마다 특색 있는 변호사 선발방식, 법조인력의 광범위한 활용체계를 갖추고 있는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로스쿨 제도가 훌륭한 법조인 양성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법률문화와 우리의 법률문화는 기초부터 다르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연방제라는 국가질서나 판례법을 인정하는 법체계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법을 대하는 일반인들의 근본적인 법의식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서 출발하는 미국의 법률문화와 "천량 빛도 말 한마디로 값는다."는 데서 출발하는 우리의 법률문화의 차이에서 보듯이 우리사회는 미국과 법률문화가 현격하게 다릅니다. 또,

로스쿨은 다민족국가인 미국에서 부유한 백인 엘리트에 의한 통치를 가능케 하는 정치제도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계의 엘리트로서 수련을 쌓게 한 다음, 모든 국가기관이나 기업체가 변호사 중에서 공무원, 검사, 판사, 고위 경영인을 임용하는 기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은 행정 고시 등을 통하여 별도로 선발하고 있고, 변호사 외에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세계에 유례가 없는 다양한 법조직역의 자격제도를 만들어서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사내변호사 제도는 이제 초기단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법률문화는 로스쿨의 원조인 미국과 완전히 다르므로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하다가 실패하여 결국에는 국민 전체에게 피해가 돌아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울러 또한 현재 제안되고 있는 로스쿨 제도는 미국의 로스쿨 제도와의 형식과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미국 로스쿨의 좋은 점은 도입하지 못하고, 미국 로스쿨의 단점만을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 차라리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6) 로스쿨 제도 자체가 갖는 고비용·저효율의 문제점을 인정해야 한다.

가. 엄청난 고비용이 소요된다.

현재는 대학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을 주고(사법시험법 제5조), 일정한 수(數)의 합격자를 선발(사법시험법 제4조)하여 2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면 변호사의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변호사법 제4조).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설립법안에 따르면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후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18조, 제22조).

따라서 법안과 같이 학사학위를 가진 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고 다시 3년의 석사교육과정을 이수한다면 그 개인적 교육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장학제도를 아무리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법조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장학금이라는 것도 결국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

의 등록금에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 주거나 같은 대학교 내의 타 대학에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을 전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들의 학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또 다른 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학생들을 법학전문대학원에 3년간 또는 그 이상 묶어둠으로써 생기는 국가적 낭비도 엄청날 것이며, 로스쿨 설립을 위한 각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비용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어느 모로 보나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그 비용은 종국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轉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 극심한 저효율을 초래한다.

법안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생 중 3분의 1 이상은 법학 외의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안 제26조).

대학 4년의 교육과정을 밟는 시기는 지적(知的)으로나 정서적으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때이므로, 이 기간 동안 어느 특정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학에서 4년 동안 법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법학개론 수준의 수업을 하는 것도 비효율이고, 비법학 전공자들에게 3년간의 로스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법률전문가로 양성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잘못하면, 질 낮은 변호사나, 끝내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고급 실업자만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는 법과대학에서 4년 동안 법학교육을 받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의 과정을 수료만 하면 법률가가 될 수 있는데, 다시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저효율입니다.

(2) 이관희 교수의 견해⁹⁾

첫째, 미국식 로스쿨 졸업생은 다양한 학부 전공의 법조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전문법조인이나 생활법조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WTO 체제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법조인은 건축이나 의료 등 업종별 전문

9) 이관희, 로스쿨 지지자에게 되묻는다(법률저널, 2006. 12. 15) 참조.

분야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노사관계 환경규제 국제금융 국제거래 공정거래 증권분쟁 신용보증 기업의 인수합병 파산 지적재산권 등 21세기 사회적 분쟁 해결을 위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을 말하는 것이다.

즉 여기에서 전문성은 학부 전공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로스쿨 졸업자라 하더라도 전문법조인이 되기 위하여는 최소 10년 이상 특정 분야의 실무경험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학부 전공과는 거의 관계가 없게 된다. 현재 미국 법률시장을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생활법조인은 변호사 문턱을 낮춰야 가능한 것이지 로스쿨식 교육으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 환상에서 깨어나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법학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우리는 미국의 판례법체계가 아닌 성문법체계가기 때문에 로스쿨 3년의 기간은 어떤 분야의 전문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기본법체계의 이론과 판례를 이해하기에도 급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비법학사 출신은 사법시험 합격하고 2년간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자와 비교할 때 그 수준은 법적 해결 능력 면에서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부의 다양한 전공을 바탕으로 법률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셋째, 로스쿨 도입은 이제까지 우리의 법학교육 50여년에 쌓아 올린 기존의 법학교육 체계를 무너뜨리고 대학교육 전체를 혼란에 빠트려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법학교육내용을 3년간의 교육용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불필요한 노력을 해야 하고, 로스쿨 목표로 적성과는 무관하게 입학·졸업이 쉬운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해 대학교육이 파행에 이를 수 있으며 모든 대학이 로스쿨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넷째, 로스쿨은 학생들의 시간을 낭비(늦은 적응)시킨다.

21세기 급변하는 IT 정보화 사회에서 각 분야가 균등히 초고속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하는데 대학교육을 마치고 늦게 로스쿨로 몰려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그것은 과거 풍요로운 시대에 미국 특유의 한가한 발상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그 특유의 사정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로스쿨을 발전시켜 오늘날 정착되었지만 그것이 우리사회에 정착되기 위하여는 최소 10년의 세월이 소요된다고 본다.

21세기 10년은 20세기 근 30년에 버금가는 변화의 시기인데 그 사이 공백과 혼란 및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서 국가경쟁력 저하는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섯째, 로스쿨은 학부 4년을 거친 사람에게 다시 3년의 기간을 더 소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변호사 되기 어렵고, 경제법칙적으로 볼 때 그 법조양성체제에서는 '저렴한' 변호사 수입료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우리의 로스쿨 결정은 일본이 2004년부터 도입 시행하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은 듯하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여러 면에서 실패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본 로스쿨(현재 74개 대학 약 6000명 정도의 학생) 졸업생의 30% 이상이 합격하기 어렵고, 현재 로스쿨 학생의 약 70%가 학부 법학과 출신이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법학과 출신 학생들을 법적 실력 면에서 따라가지 못하여 변호사자격시험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로스쿨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교수들은 기존 기본법학 교육내용을 새롭게 정리하여 가르치느라 큰 고생을 하고 있고 새로운 전문분야를 연구하고 논문을 작성할 시간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미국식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문제는 본질적으로 로스쿨을 잘못 이해한 데서 출발해서 현재의 법학교육과 법조양성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것이다.

조금 심한 표현을 한다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로스쿨 도입 계획은 법과 대학과 일반대학 졸업자를 3년간 대충 교육해서 변호사를 양산하면 경쟁을 통하여 변호사의 문턱이 낮아지고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라고 하겠다.

변호사 양산의 취지는 좋으나 법학교육의 질과 그에 따르는 법조전문화는

형편없이 떨어지고 국가경쟁력 저하가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변호사 숫자 확대만을 생각하는 시민단체 요구와 로스쿨 도입으로 대학위상을 높이겠다는 대학상업주의는 그래서 경계되어야 한다.

2. 현실적으로 나타난 로스쿨의 본질적 문제점

현재의 법전원 현실을 잘 보여주는 자료들은 이미 여러 곳에서 발표되어 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지난해 발간한 “법조인선발양성제도개선특별위원회 보고서”(이하 보고서라고만 약칭함)는 그러한 자료의 집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법전원의 실태와 관련하여 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고자 한다.¹⁰⁾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현재 법전원의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i)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로스쿨에 입학해 동일한 과정을 두 번 반복하는 법학교육의 낭비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의 비율은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9학년도 1기생의 경우 법학사의 비율은 34%였으나 2011학년도에는 49%, 2012학년도 입학생은 54%로 나타나고 있으며¹¹⁾, 각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을 더욱 선호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즉 로스쿨 입학생의 과반 이상이 학부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을 받고 단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기 위해 로스쿨에서 이미 공부한 내용을 압축하여 복습하고 있는 법학교육의 낭비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며,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학 비전공자들을 교육하여 법조인이 되게 한다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향상을 위한 현실적 목표 아래 그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²⁾ (ii) 학부 법학교육이 로스쿨교육으로 바뀌었다 해서 교육내용이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오히려 로스쿨 교육이 각종 다양화, 특성화, 실무 등의 명목으로 법학 학부의 4년 교육보

10) 이 보고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법조인선발·양성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식)가 2012년 1년간의 활동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법조인 선발과 양성제도에 관심이 많았던 회원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양성에 직접 참여했던 회원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작성한 것인데, 이광수,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법조인선발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4. 29, 이하 ‘서울변회 심포지엄자료집’),에서의 요약은 편견없이 그대로 전재 한다.

11) 로스쿨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2013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합격자 2099명 중 법학사는 1162명으로 55.36%를 차지했다. (2013. 4. 4.자 법률신문)

12) 보고서, 31면.

다 법학교육의 기초를 형성함에 있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¹³⁾ (iii) 로스쿨 교과과정에서는 기본법 과목의 '입문' 과정을 제외하고는 필수적으로 이수되어야 할 기본법 과목(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상법)마저도 선택과목으로 편성함으로써 성문법학 교육의 질적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¹⁴⁾ (iv) 로스쿨의 교과과정은 각 대학별 특성화에 맞는 교과목 편성이 거의 선택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굳이 그 로스쿨에서 특성화분야를 접하지 않고서도 로스쿨을 수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그 수강인원이 현저히 적거나 1~2명에 그치는 강좌도 적지 않아 폐강되는 과목이 속출하고 있다.¹⁵⁾

현재 법전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법과목은 종래 법과대학이 개설하고 있던 교과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법률실무를 위한 몇 개의 과목이 추가되었다고는 하지만, 우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당면 과제인 법전원 학생들이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는 법전원 당국 모두 법률실무과목에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법전원 교수진의 구성 역시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적합한 진용을 구축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존의 법학과 체제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면서 일부 실무교원을 장식적으로 추가하는 정도라는 것이 현재의 교수진에 대한 솔직한 평가이다. 이러한 교육체제의 문제점은 법전원 학생들에게 이중 삼중의 수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로스쿨의 교육이 불신의 늪에 빠지자 사설교육기관(학원)을 통한 로스쿨생의 법학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법률저널 설문조사 결과 약 90% 이상이 최소 한 과목 이상은 학원강의를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학, 주말 등을 이용해 신림동에서 헌법, 민법, 형법 기초과목을 수강하고 로스쿨에서조차 학원의 동영상 활용해 방학 때 보완학습을 하는 등 학원강의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¹⁶⁾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력은 일부 우수한 인재를 제외하면 실력이 형편 없고 민·형사상의 용어도 헛갈려 서면 작성조차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실무지도의 다수의견이다”¹⁷⁾; “출제위원이자 채점위원으로 참여한 실무가들은 로스쿨 교수들에게 이렇게 쓴 답안에도 점수를 줘야 하나고 따졌으나 아

13) 전개면.

14) 보고서, 33면.

15) 보고서, 36면.

16) 보고서, 34면.

17) 보고서 45면.

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 거의 대다수 답안지에 최고점을 주는 모습에 어이 없었다”¹⁸⁾ 스스로 법전원에 몸담고 있는 신평 교수조차도 “새로운 표준 교육과정을 만들어 교육 방식부터 바꾸고, 유럽처럼 논리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시험 유형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제발 좀 솔직하게 말하자, 이것은 절대 로스쿨 학생이 공부를 게을리 해서이거나 못해서가 아닌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말하는 등 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어 아무리 좋게 봐도 과락을 면할 수준에 도달한 답안은 전체의 20% 정도였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¹⁹⁾

3. 로스쿨의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소결

로스쿨에 대한 문제점을 애초에 예상했던 것과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구분해서 정리한 것은 문제점이 본질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다. 역시 그 본질적 문제점으로 한국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제도는 개혁된 것이 아니라 개악되었고²⁰⁾ 그리하여 지금 전통법학이 죽어가고 학문의 후속세대 양성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 4년의 전통법학을 무시하고 미국식 로스쿨 3년으로 법률이론과 실무까지 다 교육할 수 있다는 무리한 생각이고,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똑같이 3년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비합리적인 생각이다.²¹⁾ 특히 현실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하여 그나마 애초에 구상했던 로스쿨 교육조차도 파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전통법학 4년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로스쿨교육이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법치주의 교육 자체가 무너진다는 진실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법학사와 비법학사 2, 3년 교육 차별화 문제를 먼저 다루고, 다음에 새로운 예

18) 보고서 48면.

19) 보고서 48면.

20) 동지 : 이광수 변호사는 상기 논문에서 로스쿨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필자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I. 로스쿨 도입 회고와 반성. 에서 밝혔듯이 대한변협 주최 심포지엄(2007. 5)에서 필자가 발표한 기존 법과대학을 재건하는 ‘학부 로스쿨화와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방안’이 입법화되었더라면 하는 것인데, 지금도 만약 로스쿨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방안으로 가면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논문 말미에 <참 부 1>로 기록을 남기려 한다.

21) 이외에도 로스쿨의 고비용구조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도 “갈수록 많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 학생들은 법조인 되는 꿈을 접어야 할 것이다. 미국 법체계의 미래와 정당성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라고 로스쿨을 비판하고 있다. Brian Z. Tamanaha, *Failing Law School*, Chicago Press 2012. 김상우 번역, 로스쿨은 끝났다, (미래인, 2013), 여는 글 참조.

비시험제도 도입이나 기존 사법시험제도 존치나 문제와 변호사시험제도 폐지검토와 엄격한 상대평가제도 완화 등을 한국법학교육 정상화와 합리적인 법조인양성제도 구축 차원에서 다루고자 한다.

Ⅲ. 한국 법학교육의 정상화 방안²²⁾

1. 마스터 플랜

로스쿨시대에 한국 법학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부분적인 땀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고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로서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보완하여 로스쿨 교육체제를 성공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4년의 전통법학을 복원시켜 그것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륙법계인 우리 법체계를 법학사나 비법학사를 똑같이 로스쿨 3년으로 법률이론과 실무까지 다 가르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²³⁾ 그래서 로스쿨 교육을 일분처럼 법학사의 경우에는 2년, 비법학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똑같이 구분 없이 교육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전통법학 4년을 무시하고 죽이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학사의 경우는 법과대학에서 4년간 탄탄히 우리 법체계를 이해한 바탕에서 2년 동안 각 로스쿨의 특별한 전문성과 실무를 익히고, 비법학사는 법률기초이론과 실무를 익혀서 천천히 학부 전공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로스쿨 교육이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학사, 비법학사를 똑같이 3년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과거 법과대학 교육만도 못한 하향 평준화 교육이고 그러한 로스쿨 교육은 FTA 국제법률시장 개방시대에 도저히 국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법학사, 비법학사를 2년, 3년으로 구분해서 교

22)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선행연구 참고, 한국 법학교육의 정상화 과제, 공법연구(제39집, 2011. 6)참조.

23) 대한변협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주8 첫째 문제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방안」 공청회 보고서(2005. 4. 21) 어디를 보아도 로스쿨 도입 대학의 법과대학을 폐지하는 이유와 로스쿨 3년으로 어떻게 법률이론과 실무를 가르칠 것인지 구체적 설명이 없고, 국회에서 법 제정 과정에서 도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육할 수 없는 로스쿨은 불가피하게 다시 학부 법과대학으로 복귀해서 4년 법학교육을 잘 시켜서 많은 졸업생을 로스쿨로 보내고 사법시험이 어느 정도 존치된다면 직접 그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나라 로스쿨은 구조 조정되어 신입생 100명 이상 200명 정도로 중·대형화 될 수 있는데 일본(최대 300명), 미국(최대 500명)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면서 전문성·다양성 교육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로스쿨이 학부 법과대학으로 복귀한다는 전제에서 전통법학이 더 살아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현재 로스쿨 신입생 2000명 중 500명 정도를 기존 사법시험 합격인원으로 배정받는 것이다. 사법시험은 전통 법학교육을 중심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탄탄한 전통 법학교육이 살아나게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로스쿨 교육이 보다 전문화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므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로스쿨예비시험 논의는 당연히 기존 사법시험 존치로 대체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예비시험은 로스쿨 교육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로스쿨의 본질적 문제점을 더 확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로스쿨이 1500명 신입생으로 구조 조정되고 법학사, 비법학사를 2년, 3년으로 구분해서 교육한다는 전제에서 볼 때, 로스쿨 교육이 국제경쟁력을 갖는 성공을 위해서는 변호사 능력에 대한 변별력 없는 변호사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고 미국 일부 주에서 하고 있는 로스쿨 졸업하면 변호사자격 주는 제도(Diploma Privilege)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²⁴⁾ 로스쿨 신입생 1500명은 이미 엄격한 시험을 통과했고 재학기간 전문성·다양성 교육에 치중해야 하고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똑같은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능력평가는 로스쿨에서의 엄격한 상대평가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엄격한 상대평가는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 필수과목에만 한정해야 로스쿨의 선택과목 등 전문성 다양성 교육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로스쿨 법학사 2년, 비법학사 3년 구분교육, 500명 선의 사법시험 존치, 로스쿨생의 변호사시험 폐지, 로스쿨 필수과목에만 상대평가 등

24) 성낙인, 위기에 봉착한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법률저널(2013.5.3.)에서 변호사시험의 탈락율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합격자 수를 1천 5백명 수준(총정원의 75%)으로 고정시키면 앞으로 응시자가 3천명까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 과반수까지 탈락할 수 있고 결국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학원화하는 현 상을 피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을 한국 법학교육의 정상화 방안으로 검토해 보고,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2007년 필자가 제시한 영국식 '학부 로스쿨'을 다시 제안한다.

2. 로스쿨 법학사 2년, 비법학사 3년 구분 교육해야 한다.

로스쿨 교육을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구분 없이 똑같이 3년 교육으로 한다는 것은 전통법학을 무시하고 새로운 법학체계로 가보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로스쿨을 도입한 경우는 일본과는 달리 법과대학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로스쿨에서의 3년 법학교육 내용이 과거 4년의 전통 법학교육 내용보다 실무까지 해야 관계 등으로 나올 수 없고, 법학사의 경우는 변호사시험 보기 위해 다시 정리하는 것에 불과해서 시간낭비라는 것이다.²⁵⁾ 71) 따라서 법학사의 경우는 로스쿨에서 2년의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 보다 심화된 법학이론과 실무를, 비법학사의 경우는 법학기본이론과 실무를 적절히 조합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법과대학에서의 전통 법학교육이 진정으로 활성화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로스쿨 교육도 보다 전문화될 것이다.²⁶⁾ 사실 로스쿨에서 이 구분교육이 전문성이나 재정 면에서 쉽지 않을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능력이 안 되는 로스쿨은 빨리 전통 법과대학으로 돌아와서 많은 졸업생을 로스쿨로 보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2000명 규모의 신입생을 25개 로스쿨로 나누는 것은 지나치게 소규모화 되어서 전문성과 재정 운영 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규모에서는 로스쿨이 10군데 정도, 한 학년 100명 내지 20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²⁷⁾

25) 서울지방변호사회 보고서 참조

26) 줄 고, 한국 법학교육의 정상화 과제, 공법연구(제39집, 2011. 6), 14면

27) 2013. 3. 18. 이데일리는 '2009~2011학년도 로스쿨 재정현황'과 '로스쿨 유치 제안서'를 분석한 결과 로스쿨 5곳이 총 226억 4721만 원의 적자를 내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건국대 로스쿨이 112억 3489만 원, 충북대 로스쿨이 54억 7781만 원, 이화여대 로스쿨이 25억 9142만 원, 서울대 로스쿨이 25억 7728만 원, 경북대 로스쿨이 7억 6581만 원의 적자를 내었다. 10군데 로스쿨은 적자를 겨우 면했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아주대 등 10곳은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법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로스쿨 재정현황 공개를 거부한 대학까지 포함하면 적자규모가 500억 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재규,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 마련, 예비시험1차토론회(박영선 의원, 2013. 4. 9)자료집(이하 예비시험1차자료집이라 함), 15면. 에서 재인용. 최소 한 학년 100명 이상은 되어야 등록금으로 교수 인건비 정도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로스쿨 측에서는 일반 법과대학과의 상생을 위해서 법학사 1/3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²⁸⁾ 법학사·비법학사를 2년·3년으로 합치적으로 구분교육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 할 뿐더러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할 우려도 있다. 현재도 변호사시험 합격률 때문에 기존 유수한 법과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50% 이상(2013년 55.36%, 2009년 34%, 2010년 37%, 2011년 49%, 2012년 54%)법학사를 신입생으로 받고 있고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로스쿨 인가를 준칙주의로 하고 총정원 수를 개방하여 미국 로스쿨 같이 운영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데,²⁹⁾ 로스쿨의 본질적인 문제점과 변호사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변호사만 양산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3. 새로운 예비시험 도입보다는 기존의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

지난 4월 9일 박영선 의원(국회 법사위원장)이 주최한 예비시험 도입 여부에 대한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로스쿨의 원조 격인 미국에서도 로스쿨에 다닐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시험제도를 두어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길을 마련하고 있다고 논의의 장을 열어 놓으면서, 2009. 4. 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호사시험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할 때 “예비시험제도에 관하여 외국사례를 참조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3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본회의에 부의할 변호사시험법안의 유인물의 제안경위에 붙이도록 결의한 바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1) 일본식 예비시험 제도 무용론

일본의 예비시험은 2011년부터 구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실시되었는데 그 수험자격은 특별한 한정이 없고, 다만 합격자는 법과대학원(로스쿨) 수료자와 동일하게 5년 이내에 3회의 범위 내에서 신사법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시험형식은 제1차 단답식으로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에 대해 치르고 이에 합격하면 제2차 논술식으로 그 기

28) 배병일(한국법학교수회장), 축사, 예비시험2차토론회자료집(박영선의원, 2013.6.4. 이하 예비시험2차자료집이라함), 5면.

29) 김창록,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제도 도입, 득은 없고 실패만 클 뿐이다, 예비시험제1차자료집, 12면 ; 박경신, '변호사시험 응시자' 문호개방전략 비교 - 로스쿨충정원 확대 -, 예비시험2차자료집, 13-14면.

본 7법 외에 법률실무기초과목(민사소송실무, 형사소송실무, 법조윤리)을 치른다. 이어 제3차 구술시험은 논문식 시험과목에 대해 구술로 치러진다. 당연히 각 시험 유형별로 과락제도도 운영된다. 과거 일본 사법시험 못지않은 난이도에 더해 실무과목평가까지 추가해 예비시험 응시 자체를 어렵게 유도함으로써 로스쿨 안착을 이끌 의도가 적지않다는 것이 일본법조계의 평가다.³⁰⁾ 예비시험만으로 법조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초특급조(超特急組)가 예비시험의 수험자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³¹⁾ 즉, 일본에서 2011년 제1회 사법시험 예비시험이 실시되었는 바, 8,971명이 출원하여, 그 중 6,478명이 시험에 응시하여, 116명이 합격하였으며(합격율 1.8%), 116명중 95명이 신사법시험에 응시하여 58명 이 합격하여 68.2%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바,³²⁾ 78) 이는 법과대학원 출신의 전체 합격률 24.6%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³³⁾

우리의 경우 예비시험 도입논의는 로스쿨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 소외계층은 법조인이 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데 만약에 도입된다 하여도 일본식 방식은 채택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일본식 예비시험은 합격 그 자체로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졸업생과 동등하게 신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결국 예비시험 출신자는 우리의 경우 변호사시험에서 요구하는 기록식 시험의 경험을 갖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이는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이 전면적으로 로스쿨의 아류가 되어 4년의 학부 커리큘럼이 로스쿨의 선행학습의 장이 됨으로써 전통적인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어렵게 되고, 법 실무적인 직업훈련(job training)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로스쿨과 학부가 병존함으로 인해 전통 법학의 학문적 토대가 훼손될 우려가 없으나, 우리의 경우 기존의 학부마저 예비시험을 염두에 두고 커리큘럼을 바꿀 경우 법학의 기초는 완전히

30) 법률저널 (2012. 9. 12) 기사 참조.

31) 東京辯護士會法友會, 新しい 司法へ, 2011, 22 面.

32) 平野哲郎, 法科大學院: 豫備試験と研究者養成, 法學セミナー 2013, 4, 54面.

33) 2012년 제2회 사법시험 예비시험이 치러졌는 바, 9,118명이 출원하여, 7,183명이 시험을 응시하여 233명이 논술형 시험에 최종합격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 6월에 발표된 예비시험 단답식 합격자는 5,259명으로서, 전년도 합격자 1,711명에 비해 3배로 급격히 증가(2011년에는 1,339명에 불과), 이 중 로스쿨 재학 또는 졸업자 (특히 신사법시험 3진 아웃 대상자)가 얼마인지 통계는 아직까지 없으나, 사법시험 5년간 3회 응시 제한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어, 상당수가 이 들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호선, 예비시험 또 다른 개악이 되지 않으려면, 전국법과대학협의회토론회(동국대 모의법정, 2013. 6. 27), 자료집 참조.

허물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한다.³⁴⁾

(2) 사법시험 존치식 예비시험제도 찬성론

로스쿨제도는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라는 고 학벌자를 위한 제도이며,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법조계 진입장벽을 훨씬 높이고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로스쿨법 제2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로스쿨의 실상을 보면, 로스쿨 수확비용의 과다와 입학전형과 정의 불투명성이 법조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정지역과 특정학교를 중심으로 서열화·양극화가 심하여 지역인재의 양성이 불가능하며,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 실무수습이 부실하여 법조인의 질저하(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역행함)가 지적될 뿐만 아니라, 로스쿨의 특성화과목 수강 기피로 폐강과목이 속출하여 다양화·특성화의 취지도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를 대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고,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변호사시험제도와 병행하여 사법시험-사법연수원제도를 유지하든지,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을 도입하든지 해야 한다.³⁵⁾

그런데 사법시험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이고, 사법시험은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환경·배경·나이·조건 등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로서, 직장인도 주경야독하여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다. 따라서 새로이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공정경쟁의 상징성이 강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현행처럼 변호사시험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사법시험 존치가 예비시험 도입보다 훨씬 간편하다. 예비시험을 도입하려면 변호사시험법의 대폭 개정이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지만, 사법시험을 존치하려면 변호사시

34) 이호선, 왜 국민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가?, 법조인 선발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4. 29), 자료집 46쪽 참조.

35) 양재규,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 마련, 예비시험1차토론회, 21면

험법 부칙을 개정하고³⁶⁾ 사법시험법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면 된다.³⁷⁾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면서 학력 인플레이 현상을 설득력있게 지적하기도 한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로스쿨 설치대학의 법학부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부의 졸업자가 반드시 변호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바, 법학부를 나와서 신문기자가 될 수도 있고, 정부 기관에도 취직하여 경제부처에서 재정, 경제와 주로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으며, 일반 기업체에 취직하여 마케팅이나 재무와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다. 즉 법학부를 나와서 판사, 검사, 변호사의 범주 직역이 아닌 다양한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법학부에서 배운 지식들이 활용될 수가 있는 것인바, 법학은 사회 각 모든 분야와 연결되어 있고, 사회 어느 작용이던 법률과 관련을 맺지 않고 있는 분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법학부 졸업자는 굳이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4년간의 교육을 거쳐 “준법률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법학부 출신은 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의 법무팀에서 근무하면서 미국의 “인 하우스 로이어(in-house lawyer)” 즉 사내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행정고시에 붙어서 정부부처의 법률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하며, 교사가 되어서 중, 고등학교에서 법과 관련된 과목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그런데 로스쿨로 전환한 25개 대학에서 법학부 과정이 폐지되면서 사회 각분야에서 법적 지식을 갖춘 준법률가로서 활동하며 이에 상응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를 상당부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로스쿨이 ‘의미 없는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들이 많아지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위와 같은 법률직역에 진입하고 있고, 이것이 ‘변호사의 다양한 사회분야 진출’이라는 명목으로 미화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로스쿨의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로스쿨 제도는 결국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³⁸⁾

현 로스쿨 제도의 불완전성에대한 겸허한 인정이 필요하다. 즉 현스쿨 제

36)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을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한다.”로 수정하고, 제1조 단서를 삭제하면 된다.

37) 양재규, 위의 글, 22면.

38) 김한규, 법조인 선발·양성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본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예비시험1차토론회, 48면.

도에 대하여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와 사회, 국민들에게 큰 부정적 후과(後果)를 미칠 것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예측을 수용해야 한다. 결국 현 로스쿨 제도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되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 두어야만 한다. 즉 법조인 선발방식의 이원화를 전제로 할 때에 변호사 시험과 사법시험 준치의 이원화 방식을 통해 현행 로스쿨 제도가 가지는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법조인 선발·양성제도의 대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³⁹⁾

서울지방법변호사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⁴⁰⁾를 실시한 결과, 법조인이 되는 기회 평등 보장 측면에서는 '사법시험'(73.5%), '로스쿨'(26.5%)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에서 2012년 5월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⁴¹⁾ 결과, 유효 응답자(550명)의 71.5%가 선발인원을 줄이더라도 로스쿨과 별개로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현 사법시험이 2017년에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사법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반면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법시험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26.7%에 그쳐 대조적인 결과로 나타났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경우 선발인원의 적정 숫자에 대해 300명이 상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7.8%를 차지하여 올해의 사법시험을 통한 선발인원 500명과 2013년 선발인원 300명에 근접한 수치에 어느 정도 사회적 동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⁴²⁾ 또한 이미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면서 로스쿨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이 서로 경쟁하고 상호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 수요자인 국민들에게도 더욱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른바 고시낭인의 양산 문제는 변호사시험과 같이 응시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사법시험의 유지는 법과대학이 그 기능을 다하도록 함을 통해 법학교육의 정상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법

39) 『대한민국 법조양성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변호사 선발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변협 법조인선발양성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김현철 변호사, 2012. 10. 29. 참조

40) 법조인선발양성제도 연구관련 여론조사 결과보고서(2012. 11, 서울지방변호사회)

41) 법조인력양성제도로서의 사법시험준치여부에 대한 시민인식조사(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42) 김한규, 위의 글, 57면.

조인 선발제도의 목적과 효율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기능적 측면 또한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사법시험제도를 법전원의 방식과 동시에 운영한다면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사법연수원”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의 운영이 사법시험 방식에 비판이 주어지는 한 원인이었다. 물론 사법연수원 운영을 법전원 내부에서도 법실무교육 강화 필요에서 존속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사법시험의 방식으로 변호사를 선발하는 경우라면 사법연수원의 존속은 필연적이다.⁴³⁾

(3) 예비시험제도 도입 반대론

로스쿨 측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데 변호사예비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출범시켜 놓고 그 근간을 흔드는 제도로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게끔 한다고 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 사법시험의 ‘시험을 통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의 전환을 의미해서 변호사가 되는 것은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⁴⁴⁾ 새로운 법학교육시스템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통하여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법기술자의 양성이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화·다양화·특성화된 ‘21세기형 법률가’를 양성해야 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다루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시험은 현행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자격취득과 관련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로스쿨 제도 자체를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모든 로스쿨은 반드시 경제적 사회적 취약 계층중에서 정원의 5% 이상을 선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⁴⁵⁾ 일본의 예비시험의 경우 경제적 약자 확정이 어려워 수험자격을 공개한 결과 대입경쟁을 갖췄고 들어와 ‘시험기술’이 뛰어난 20대의 대학 재학생들이 로스쿨이라는 체계적인 법학공부를 우회하여 시험만으로 법조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의 역할을 하여 실제로는 우수한 법학부 학생들을 위한 특급 바이패스(bypass)코스로서 전략해 버렸다,⁴⁶⁾ 결국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지

43) 김경재,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 (예비시험2차토론자료집), 46면.

44) 신현윤,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 (예비시험1차토론자료집), 축사.

4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09학년도 입시결과 특별정형으로 선발된 인원은 총정원의 6%(125명)이었다.

출해야 하는 비용을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제적 약자를 위한 비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로스쿨의 총입학정원 제도의 폐지 및 인가기준을 완화하여 로스쿨 인가받지 못한 다수의 법과대학/법학과가 인가를 받고,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 90% 전후인 자격시험으로 만들어서 예비시험 도입론 자체가 필요 없게 해야 한다.⁴⁷⁾

(4) 유보 관망론

로스쿨 제도 시행초기 취약단계에서 예비시험 도입 조기 논의는 사법시험 장기 응시생의 예비시험 수험생으로의 전환 등을 부추겨 사법시험 병폐를 재현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예비시험 도입 여부는 2017까지 사법시험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로스쿨제도의 정착여부, 2,3기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현황, 취약계층 범조인 진출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2015년경 논의함이 상당하다.⁴⁸⁾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이나 사법시험 존치의 문제는 한 나라의 범조인력양성 제도 전반과 관련된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것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새로운 범조양성시스템인 로스쿨제도 전반을 제대로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통하여 바람직한 범조양성시스템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2015년 이후에 법무부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두어 예비시험제도를 비롯한 범조인력양성제도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⁴⁹⁾

(5) 정 리(사시존치로 로스쿨 본질적 문제점 보완해야)

원래 예비시험 문제는 로스쿨이 학부 4년 이후 3년의 대학원 과정이므로

46) 松本恒雄, 일본의 법과대학제도와 신사법시험의 현황, 법학논고.40, 2012. 852면. 2011년 합격률 1.8%(116명), 2012년 합격률 3.0%(233명) 특히 2011 합격자 중 13.8%에 해당하는 8명이 법과대학원재학생이고, 9명이 응시하여 8명이 합격함으로써 합격률이 88.9%에 이르렀다.

47) 김창록,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제도 도입, 득은 失만 클 뿐이다, (예비시험1차토론자료집), 75-77면 : 같은 취지 : 박경신, '변호사시험 응시자' 문호개발전략 비교 - 로스쿨총정원 확대 -, (예비시험2차토론자료집) 참조.

48) 인권섭(법무부범조인력과장), 예비시험 논의에 대한 의견, (예비시험1차토론자료집), 93-94면 참조.

49) 김용섭, 범조인력 선발·양성제도 개선 논의의 방향과 지향점, 범조인력 선발·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4.29, 이하 서울변회심포지엄자료집), 81-82면.

사회 소외계층이나 경제적 약자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기회균등의 민주주의 사회라고해서 거론된 것인데, 실제로 검토해 본 결과 그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로스쿨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 즉 로스쿨 3년으로는 법학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로 집약되어 사시준치식 예비시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방향으로 정리된다.⁵⁰⁾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전통법학이 죽어가고 법치주의 기본인 시민법학교육이 안되고 있는데 로스쿨에 장학금지원, 총정원확대 등의 해결방안은 그 본질적인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고, 유보관망론은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따라서 사법시험 존치로 우수한 인재를 법과대학에 유치하고 사법시험에 대비하는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법학실력을 차곡차곡 쌓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과정·박사과정을 거치면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연구하는 교수로 양성해야 한다. 로스쿨은 학문연구보다는 법기술자 내지 law businessman 양성에 치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론법학이 고사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4. 로스쿨 변호사시험 폐지 검토와 상대평가제도 개선해야 한다.

로스쿨 교육을 법학사 2년·비법학사 3년으로 개편하고, (예비시험 대신에) 500명 정도의 사법시험제도를 존치시키면서, 1500명 정도의 로스쿨총정원이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정도의 10개 정도의 로스쿨로 구조조정 될 때, 진정한 국제경쟁력 있는 전문화·다양화·특성화의 로스쿨 교육을 위하여 변호사시험제도는 폐지해서 졸업하면 변호사자격증 주는 제도(Diploma Privilege)를 도입 검토 되어야 하고 상대평가제도는 필수과목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1) 변호사시험제도 폐지 검토

현재 로스쿨 교육이 법학사·비법학사 구분없이 3년만에 법률이론과 실무를 다 가르쳐 보겠다는 본질적인 문제점에서 파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에 더하여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하여 로스쿨 교육이 본래적으로 추구하려는 전문화·다양화·특성화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로스쿨 교육이 일본처럼 법학사 2년, 비법학사 3년으로 구분 교육될 때에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를 요한다. 구분 교육을 받은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똑같이

50) 동지 : 이호선, 왜 국민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가 ?, 서울변회심포지엄자료집 참조.

놓고 기본적인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것이 별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법학사는 2년간 법학의 전문성 심화와 실무를 익혀야 하고, 비법학사는 법의 기본원리와 실무를 효율적으로 배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각 로스쿨이 특성을 살려 좋은 내용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충실히 소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데, 오히려 변호사시험제도는 이러한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자격을 줄 수 있는 제도(Diploma Privilege)를 검토해 보는 이유이다. 미국 위스콘신주와 뉴 햄프셔 주,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 호주의 일부 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그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이미 로스쿨 입학시 총정원 1500명 정도로 엄격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로스쿨 수업을 충실히 졸업했다면 굳이 사회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변호사시험으로 로스쿨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⁵¹⁾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도 변호사시험은 초보변호사 능력의 30-40% 밖에 검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면서도 소비자보호에는 무력하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어차피 로스쿨 졸업생들의 소송수행 등의 능력은 로펌 등에 가서 다년간 실무경험을 쌓으면서 가능한 것이다. 겨우 수험생의 25%(500명 정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시험을 치를 실익이 적다고 하겠다.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상대평가로 총평점 C 이하를 25% 정도로 강제 배정하면 법률시장에서는 위 C 이하 졸업생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그러나 이들은 정치 사회 경제 등 다방면에 진출해서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음)변호사시험을 보지 않고도 법률시장에서 사실상 탈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로스쿨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역량도 최대한 발휘되어서 미국이나 일본의 로스쿨을 능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을 반드시 치뤄야 한다면 ‘자격시험’ 성격의 ‘가벼운 시험’으로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51) 줄고, 변호사 자격시험 대신에 연수를, 동아일보(2010. 9.4). 한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원제 선발시험’은 그대로 남겨두어 20%대의 합격률에 시달린 결과 실패로 귀결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다. ‘정원제 선발시험’을 남겨두고서 로스쿨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김창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만들어야 한다, 「법과 사회」 40, 2011. 6면. 그러나 우리는 로스쿨입학시 총정원이 소수로 정해졌고 엄격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로스쿨에서의 충실한 교육을 수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변호사시험법 제8조 제1항의 선택형이나 사례형 논술시험은 보지 말고 기록형 논술시험만을 볼 것을 제안한다.⁵²⁾ 왜냐하면 기록형 논술시험은 실질적으로 변호사 능력을 잘 검증할 수 있어서 로스쿨도입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각 로스쿨에서 엄격한 상대평가에 의한 주관식 논술시험치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볼 때 초임 변호사 능력을 제대로 검증도 못하면서 사회적 비용만 많이 드는 과거 사법시험 같은 복잡한 시험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로스쿨 교수들도 시험에서 자유로워지고, 각 로스쿨이 표방한 특성화 교육도 가능해져서 로스쿨 졸업생들이 졸업 후 각자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사업체나 정부기관과 단체 등으로 진출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엄격한 상대평가제도 완화

2010년 12월 7일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2012년 초에 졸업하는 로스쿨 1기생의 경우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으로 결정했는데, 이는 그 해 11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로스쿨협의회가 협의해서 내놓은 ‘로스쿨학사관리 강화방안’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로스쿨마다 학사경고 및 유급제도를 마련해 전체정원 대비 최대 20%까지 유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2회 유급이나 3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하고, 모든 로스쿨 수강과목은 상대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바로 이 모든 수강과목에 대한 상대평가제가 로스쿨이 본래 지향하고자 했던 전문화·다양화·특성화를 가로 막는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평가는 헌법·민법·형법 등 필수과목에만 국한할 필요가 있다.⁵³⁾ 그리하

52) 동지 : 부구욱(대교협 로스쿨대책위원장), ‘로스쿨 정착 가로막는 변호사시험 문제 있다’ 중앙일보(2010.12.18)

53) “전 세계에서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이 ‘학사관리 강화방안’은 이후 로스쿨을 입학원으로 만들어버리는 자충수에 다름아니었다” 하면서 “모든 과목 상대평가 실시 라는 제도 아래서 로스쿨 학생들이 하는 ‘합리적’인 선택은, ‘1. 학기초에 강의실에 들어가 보고 C 이하의 학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과목을 신청하지 않는다. 2. 여차피 C 이하의 학점을 받게 될 것 같으면 시험과목을 신청한다’라는 것이다. ‘로스쿨이니 학점에 신경쓰지 말고 변호사가 된 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을 신청하라’라는 요구는 그들에게는 지나친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공부해서 몇 점을 받으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정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더 나은 점수를 받아야만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험과목을 제쳐두고 학점취득에도 불리한 과목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해 신청하라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김창록(법전원 제도발전실무위원장)

여 미국 로스쿨교육을 참고하여 전문적 선택과목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선택과목이나 변호사실무에 초점을 맞추어 클리닉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때 다양화·특성화의 길이 열리면서 국제경쟁력을 갖게 된다.

IV. 결 어 (법개정 청원)

로스쿨 도입 회고와 반성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한국 법학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2007년 문제점 투성이의 로스쿨법 통과를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3분 만에 졸속으로 통과되었고, 통과된 이후에는 각 법과대학에서 법학교육의 정상화라는 문제는 제쳐두고 오로지 로스쿨 유치에만 전념했고 로스쿨이 된 이후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을에만 신경을 써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노정되어 전통 법학교육이 파행되면서 법치주의 기반이 되는 시민법학 교육이 무너지고 있고, 그것은 법학 학문 후속세대 양성실패와 궁극적으로 로스쿨 교육도 그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로스쿨 출범 5년차에 들어서서 예상했던 문제점이 그대로 들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시바삐 개혁의 칼로 수술하지 않고는 로스쿨 제도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개혁의 핵심은 전통법학 4년 교육을 살리는 획기적 조치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로스쿨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통 법과대학의 4년 교육을 제대로 인정하여 로스쿨 교육에서 법학사는 일본처럼 2년 교육으로 졸업시켜 비법학사 3년과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법과대학 교육의 중심이 되어 왔던 사법시험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500명 정도 존치시키고 로스쿨 총정원은 1500명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문성과 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법학사·비법학사를 2년·3년으로 구분해서 교육하기 어려운 로스쿨은 다시 법과대학으로 복귀하여 전통법학을 복원하는 역할을 하고, 남은 로스쿨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중·대형으로 해아 FTA 국제법률시장 개방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법시험폐지를 담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삭제제를 포함하여 로스쿨법 개정안 <입법청원서>를 입법청원하는 바이다.

〈입법 청원서〉

진정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 및 변호사시험법 일부법률개정안 입법청원서

-대한법학교수회 및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 일동-

1. 청원이유

○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함)은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구분함이 없이 똑같이 3년을 교육기간으로 하여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는 4년제 법과대학의 법학교육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과대학에 우수한 인재가 오지 않는 등 법과대학과 법학교육자체가 고사되어 가고 있고, 이는 다시 로스쿨의 법학교육의 질을 하향평준화(법학사와 비법학사를 똑같이 교육)로 떨어뜨리는 악순환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한국사회 전체의 법치주의 교육이 크게 무너져가고 있음. 따라서 일본처럼 합리적으로 법학사는 2년, 비법학사는 3년으로 구분 교육하여 법학사는 보다 심화된 법학이론과 실무, 비법학사의 경우는 법학 기본이론과 실무를 적절히 조합한 교육으로 로스쿨이 진정으로 전문화된 석사과정으로 의미를 갖을 것이며 그렇게 될 때에 법과대학에서의 전통 법학교육이 진정으로 활성화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로스쿨 교육도 보다 전문화될 것임.

○ 만약 전문성과 재정 등의 이유로 구분교육이 어려운 로스쿨은 다시 전통법과대학으로 복귀하여 많은 졸업생을 로스쿨로 보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25개의 로스쿨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국제경쟁력이 없고 우리나라는 10개 정도 로스쿨에 최소 100명 이상 최대 200명(일본 300명, 미국 500명)이하 정원으로 구조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로스쿨에서의 법률이론과 실무 교육을 뒷받침하고, 로스쿨의 법과대학 복귀를 유인할 수 있는 4년 전통법학의 복원과 활성화 방안으로 사법시험 폐지가 아니라 존치는 불가피한 선택인데, 현재 정원 80명 이하 로스쿨이 전통 법과대학으로 복귀한다는 전제하에서 로스쿨 총정원 2000명 중 500명은 사법시험 정원으로 할당되어야 합리적임.

○ 500명 정원의 사법시험 존치는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를 원천적으로 보완하고 사회 소외계층과 경제적 약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현재 거론

되고 있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효과적으로 대체하는 기능을 갖고, 전통 법학을 복원하여 로스쿨 교육의 밑바탕을 이루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법치주의 구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한편 현행 변호사시험법에는 응시자 본인에게도 성적을 비공개로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바, 변호사시험성적은 공직 임용이나 기타 변호사로서의 소양과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밀행주의를 고수하여 공직 임용이나 각종 채용에서의 명문대학부의 서열 고착화의 폐해를 가져오고, 성적 외의 인간적 각종 배경의 작용 등에 대한 의혹 등으로 사회적 정의감과 윤리를 심각히 저해하고 있음.

2. 주요내용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학사에 대하여는 3년의 과정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입학과정에서 법학 소양측정을 불허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

○ 사법시험법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부칙들을 삭제하고,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에 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

3-1. 법률 제 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법학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2년으로 단축한다.”

제23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 위의 논문과 입법청원서는 지난 2013년 7월 5일(금) 국민대학교에서 대한법학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으로 개최되었던 『대한법학교수회 법인설립기념 심포지엄 및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발표되었던 글과 입법청원서의 내용이다.